

주 상 ~ 한 기 리 국 도 건 설 공 사
환 경 영 향 평 가 서 [초 안]
-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-

2013. 10



국 토 교 통 부
부산지방국토관리청

제1장 사업의 개요

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◦본 사업은 국도 3호선(목포~부산) 구간 중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~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구간으로써, 기존 국도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량소통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

1.2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

◦「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」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함

1.3 추진경위

- 2006. 02 : 환경영향평가 협의 (낙동강유역환경청, 자연환경과)
- 2013. 06 :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(낙동강유역환경청, 환경평가과-3594)
- 2013. 07 :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
- 2013. 08 :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
- 2013. 09 :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·공람 및 설명회 개최

1.4 사업의 내용

- 사업명 : 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
- 도로구분 :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(국도 III등급)
-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~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
- 사업시행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
- 협의기관 : 낙동강유역환경청
- 공용개시 : 2019년도

◦도로연장 및 설계속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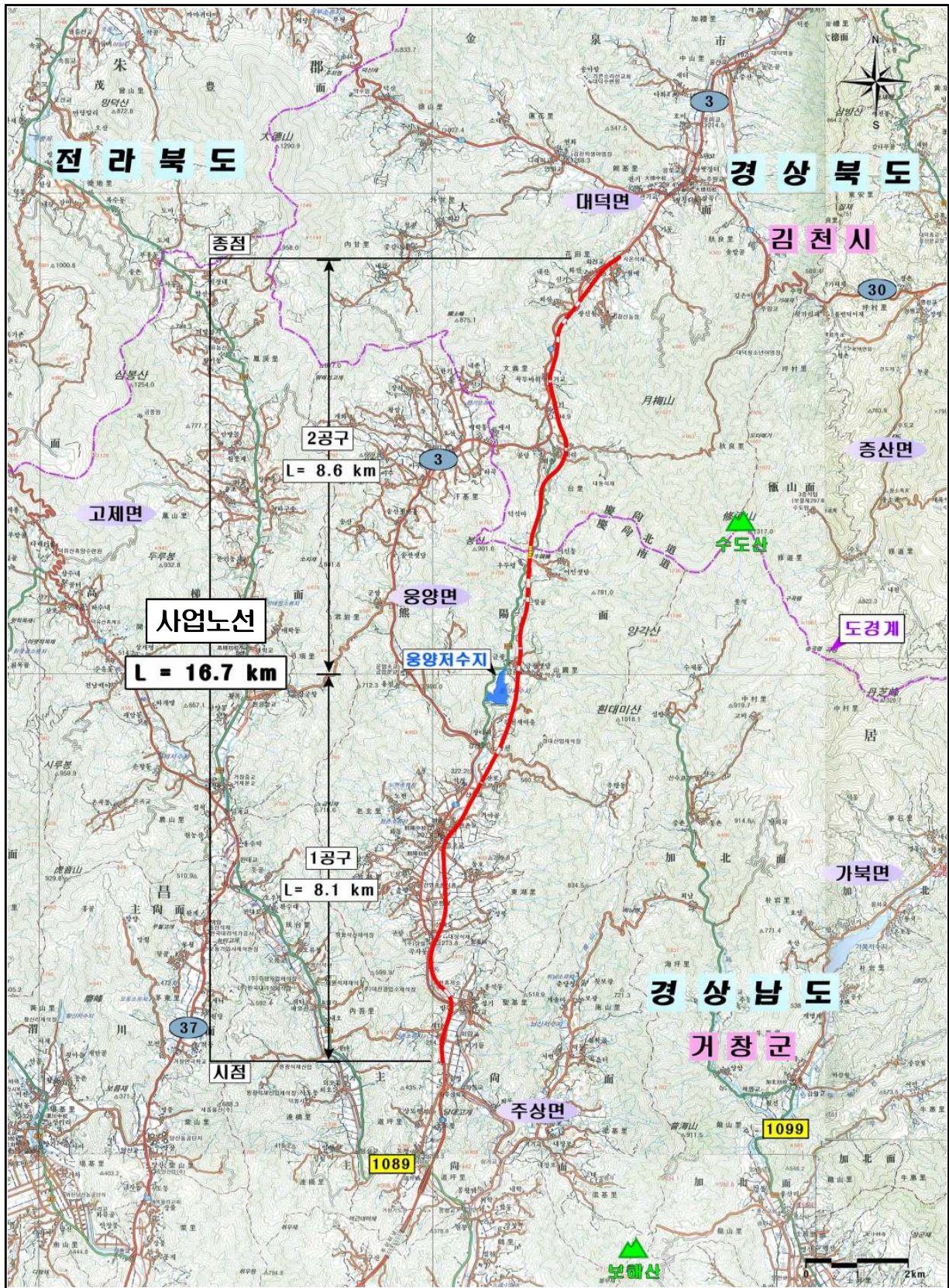
구 분	1공구	2공구	전 체
연 장	8.1km	8.6km	16.7km
설 계 속 도	60~70km/hr	60km/hr	60~70km/hr

◦교차로 및 시설물

구 분	1공구	2공구	전 체
교 차 로	5개소	5개소	10개소
터 널	-	1개소/185m	1개소/185m
교 량	3개소/232m	9개소/855m	12개소/1,087m

◦도로폭원

구 분	내 용			
일 반구 간				
	차로폭	길어깨	중분대	총폭원
	10.0m	3.0m	0.50m	13.50m
	2@3.25+3.50m	2@1.50m	-	
교 량 부				
	차로폭	길어깨	중분대	총폭원
	10.0m	3.90m	0.50m	14.40m
	2@3.25+3.50m	2@1.95m	-	
터 널 부				
	차로폭	길어깨	중분대	총폭원
	7.0m	5.0m	0.50m	12.50m
	2@3.50m	2@2.50m	-	



<사업노선 위치도>

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

2.1 의견수렴 개요

- 「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」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함

2.2 의견수렴 내용 및 결과

가. 공고 및 공람

구 분		내 용				비 고
주관기관		거창군				거창군 공고 제2013-958호
공고	신문공고	한국일보 (일간신문)	경남일보 (지역신문)	경남도민일보 (지역신문)	경북일보 (지역신문)	
	공고시기	2013.09.02	2013.09.02	2013.09.02	2013.09.03	
공람	공람장소	거창군청 건설과	거창군 웅양면사무소	김천시청 건설과	김천시 대덕면사무소	
	공람기간	2013.09.03 ~ 2013.09.30 (20일 이상)				
정보통신망 게시		거창군 홈페이지	김천시 홈페이지	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EIASS)		

나. 설명회 개최

구 분	내 용		비 고
개최기관	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		거창군 공고 제2013-958호
개최장소	거창군 웅양면사무소(회의실)	김천시 대덕면사무소(회의실)	
개최시기	2013.09.10(화) 오후 14:00	2013.09.10(화) 오전 10:30	
개최공고	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		

다. 의견수렴 결과

구	분	의견제출	비 고
관 행 정 기 관	낙동강유역환경청	○	
	경 상 남 도	○	
	경 상 북 도	○	
	거 창 군	×	
	김 천 시	×	
주 민	거 창 군	○	1인
	김 천 시	×	

2.3 의견수렴 반영여부

가. 주민 등의 의견

구 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주민의견 (공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이경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웅양면 산포리 전 1444번지 외 2필지 소유자로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하고 싶습니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본 노선은 2005년 4차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8년 거창군 도시계획도로 대로 1-17로 기 결정고시. 현재 4차로에서 1차로 축소하는 2+1차로 과업으로 추진되며, 노선 조정시 도시계획 변경과 추가적인 묘지 과다 저축 등 상대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노선 조정 불가함 	
주민의견 (주민설명회)	◦사업노선의 4차로 도로건설계획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미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이 부족하여 2+1차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됨 	
	◦노선대 이후 대덕면~김천시 구간의 도로 개선(4차로)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사업노선(주상~한기리) 구간 외 의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김천~교리 구간은 4차로로 시공 중에 있으나, 한기리~교리 구간은 교통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성 및 경제성이 부족하여 「제3차국도·국지도 5개년 계획안」에 의거 2차로 시설개량으로 사업 추진중임 	
	◦양계장(산들란) 앞 구간의 농경지(논, 1,400평) 우회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부분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도로노선의 계획상 일부 농경지 저축은 불가피하나, 세부적인 기술검토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 	
	◦정동마을앞 노거수 보호 및 새터교차로 구간의 조정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공사시 노거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겠으며, 새터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교차로 설치계획을 기술 검토함 	

나.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낙동강유역 환경청	1. 총괄 ◦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~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일원의 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으로서 아래의 각 평가항목별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·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	◦반영	
	2.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가. 대기질 ◦터널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-터널공사시 환기계획 등을 포함한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◦반영 -우두령터널은 개착식구조 -공사시 발생하는 오염물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	
	◦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-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주기 반기1회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분기1회 이상으로 설정하고, 조사지점에 성기리(1), 독립가옥(6)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	◦반영	
	나. 수질 ◦수질 조사·분석 -수질 현황조사의 목적은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의 수질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 조사결과를 2회만 제시하였으나, 하천의 유량과 수질은 계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량이 풍부한 시점에 유량과 수질을 추가 측정하여 제시하여야 함	◦반영	
	◦공사중 오수처리계획 -공사중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의 예측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오수발생량을 예측하고 오수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점의 수질을 고려하여 오수처리수의 방류수 목표수질 농도를 설정·제시하여야 함 ※오수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점의 수질이 양호하고 하류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원이 위치하므로 오수처리수의 방류수 목표수질 농도를 BOD 및 SS 8mg/l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	◦반영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낙동강유역 환경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저수지 및 하천과 인접한 도로 및 교량 노면으로 부터 초기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설치위치 및 저감시설 종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조사주기를 운영시 반기 1회로 하였으나 운영시에도 유량과 수질의 계절적 영향을 고려하여 분기1회 이상 수질조사·분석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(환경부, 2008)」을 참고하여 시설의 유지, 관리, 수질 모니터링 등 비점오염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터널 인근 관정에 대한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수질오염총량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배출부하량 산정 등 총량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.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개발(배출)부하량에 상응하는 기존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낙동강청(수질총량관리과)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거창군으로부터 기간 외 사업에 대한 할당을 받아 총량협의를 하여야 함.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동 사업지역은 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 지역으로 「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및 해당 지자체의 개발사업 협의내용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. 	◦반영	
	<p>다. 지형·지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수도지맥 복원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계획노선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수도지맥을 통과하고 있으나 지형훼손이 발생하는 개착식터널로 계획하고 있어 굴착식 터널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계획노선 구간에 개착식 터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수도지맥 통과구간을 개착식터널로 계획하고, 상부를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 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낙동강유역 환경청	-계획노선은 수도지맥 능선축 구간을 개착식 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지맥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복원 후 지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	○반영	
	·능선축 구간에 절토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우두령 터널에 대한 단면을 일정구간별로 다수 작성	○반영	
	·공사시 개착구간(실제 지형변화가 일어나는 범위)을 도면에 표시하고 복원 후 지형 및 지형구배, 계획고 등을 함께 표시	○반영	
	·지형복원에 필요한 토사량을 산정하고 이를 부족토량 확보계획에 반영	○반영	
	○지형변화 예측 및 대책 -사업시행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지형변화의 규모를 예측하여 결과를 작성하고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를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반영	
	·사면이 발생하는 구간의 위치, 연장, 최대 절성도 사면고 등을 표로 작성	○반영	
	·절토사면고 20m 이상, 성토사면고 10m 이상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사면고를 명시	○반영	
	라. 동·식물상 ○기존 자연환경조사 등을 포함한 생태계영향 검토 -도로예정노선에 대한 생태계 현황조사가 2회 실시를 하였으나, 그 중 1회는 동계에 실시되어 도로노선에 대한 자연환경의 계절적 현황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동·식물상의 출현,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	○반영	
	-동·식물상 조사결과는 문헌, 탐문 및 현지 조사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	○반영	
	-현 도로사업의 경우 2006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므로, 당시 조사된 자연환경조사의 결과를 추가 포함 후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생물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전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반영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낙동강유역 환경청	-출현 생물군에 대한 목록 작성은 조사지점 별 그리고 조사시기별로 작성하여 대상 생물군에 대한 지점간 및 시기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, 출현 종 목록에는 문헌 자료 조사결과를 함께 병기하되 문헌조사의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	○반영	
	·기존 자료를 추가하여 사업예정지구 및 그 주변에 대한 생태계 정밀분석	○반영	
	·주요 생물종에 대해서는 각 종별 영향예측 및 보전방안을 제시	○반영	
	○생태네트워크 분석 및 육상생물 보전방안 -육상 및 육수생물상의 보전대책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제시 가능한 교량, 생태통로, 배수관, 통로암거, 측구, 유도펜스 등의 시설물들은 사업구간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과 위치들에 대한 분석 후,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	○반영	
	-현재 제시된 저감시설물 및 보전대책은 대상구간의 생태계 영향여부, 대상생물의 영향 정도 및 효과에 대한 분석 후 계획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, 사업구간과 그 주변에 대한 생태네트워크(Blue-Green Network)와 대상노선으로 인해 영향 및 단절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및 생물군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저감시설물의 배치, 규모, 수량 등을 확정하여야 함	○반영	
	·대상구간 및 그 주변의(각 분류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) 생태네트워크 분석을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실시	○반영	
	·생태네트 분석에서는 ① 도로구간 주변의 구체적인 생태네트워크 현황, ② 사업구간 주변 주요 생물군 및 주요 서식지 현황 ③ 도로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단절 및 영향정도 ④ 도로공사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 및 서식지 등이 제시되어야 함	○반영	
	·분석된 생태네트워크 위에 사업구간을 중첩 표시하여 생태적 단절 및 영향정도를 도면에 시각적으로 표시	○반영	
·도로공사로 생태적 단절 또는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과 구간을 제시	○반영	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낙동강유역 환경청	·생태네트워크분석 후 보전대책 및 저감시설 물 설치가 필요한 도로공사 구간 제시	○반영	
	·각 저감시설물의 경우 이용이 예상되는 대 상 생물군 제시	○반영	
	·대상 생물군의 분석 이후 각 저감시설물(교 량, 생태통로, 배수관, 통로암거, 측구, 유 도펜스 등)의 위치, 규모, 수량을 결정하여 도면에 제시	○반영	
	○주요 종 및 서식지 정밀모니터링 방안 -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림, 논습지 및 하천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, 서식 또는 서 식가능성이 있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과 서식지에 대한 영향여부와 보전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하며, 영향이 예상되는 법적보호 종 등 주요 종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생육이 왕성한 시기 정밀 모니터 링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	○반영	
	-정밀 모니터링 시 대상 법적 보호종 및 주 요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 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선수립하여야 함(※ 「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 축」(KEI, 2010) 42-46쪽 참조)	○반영	
	·각 대상 법적보호종, 주요 생물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하여 생활사를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	○반영	
	·정밀 모니터링시 조사기간, 조사지점, 조사 경로를 결과에 첨부	○반영	
	○훼손수목 추가이식 -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량(11,964주)이 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식수목량 산 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 한 수목훼손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, 보전가치가 있는 참나무류 및 소나무류를 중심으로 아래 제시된 자료 및 관련 문헌들 을 참고하여 훼손수목의 수형, 흉고직경, 지 형, 토양환경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음 훼손수목을 최대한 이식 또는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(※이식수목량 재 산정 시 총 훼손수목량의 10% 이상을 이식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함)	○반영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낙동강유역 환경청	·지자체에 무상 양도하여 녹지 및 공원조성에 활용하는 방안 추가검토	○반영	
	·이식수목 가이식 계획여부	○반영	
	·가이식 및 이식예정지역이 선정된 경우 도면에 해당지역 제시	○반영	
	·수목관리계획 수립 ※이수동·최송현, 2009. 훼손예정지의 지형 및 수목 형태를 고려한 이식목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.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(6): 535-544 ※한국수목보호연구회, 2001. 훼손지의 수목 이식 활용에 관한 조사. 수목보호 6:149-156	○반영	
	<p>마. 친환경적 자원순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관리계획 -공사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재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	○반영	
	·지장물 철거시 유해물질(석면, 수은, 변압기 내의 PCB 등)이 포함된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, 이와 같은 유해성 폐기물 발생시의 적정 처리계획 수립	○반영	
	<p>바. 소음·진동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-본 평가서(초안)에서는 예측식 및 예측인자의 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근거의 제시 없이 도로교통 소음도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	○반영	
	·계획노선과 유사한 지역(교통량, 차속 등 고려)을 대상으로 실측소음도와 예측소음도를 비교·검토했던 타당성 검토자료	○반영	
	·목표년도까지 5년 간격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구간별 및 시간대(24시간)별 차량의 통행속도와 교통량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(교통관련 전문가(소속 및 참여자 등을 명기)의 교통예측결과에 관한 근거자료와 의견서 첨부)	○반영	
	·상기 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도의 시간대별 소음도 예측	○반영	
·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연도 및 시간대 선정	○반영	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낙동강유역 환경청	·저감대책의 수립시기와 방법 선정(선정 근거 명기)	○반영	
	·각 정온시설의 층별 소음도 산출(2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수음점 높이 고려)	○반영	
	·계획노선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현황소음 및 소음예측 분포 등을 근거로 소음기여도 산정 및 누적 평가	○반영	
	○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-공사시 및 운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음·진동 피해가 발생하는 정온시설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의 수립이 가능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(모니터링 지점 선정, 기간, 빈도 등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	○반영	
경상남도 (도로과)	○본 사업 계획노선에 근접한 정온시설(주거지역 및 사육시설, 학교 등)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므로 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지형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재대 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불가피하게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시각적 저해를 경감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방음벽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	○반영	
	○본 사업시행으로 기존도로의 단절, 동일 농경지의 인위적 분리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구간을 조사·분석한 후 통로박스 등으로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생활 및 영농장비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충분한 규격으로 설치되어야 함	○반영	
	○주요 절·성토 구간 및 기타 인접 지역의 급경사 지역에 대해 현장 여건에 맞는 사면안정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특히 강우 시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가옥 및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침사지, 가배수로의 설치와 비닐덮기의 적절한 활용 등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,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적물을 수시로 준설·정비하여야 함	○반영	
	○절·성토 사면에 대한 복원 시 토질과 사면안정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의한 공법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 등과의 부조화 및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적,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적인 식생천이가 진행될 수 있는 생태복원녹화공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	○반영	
○기타 사업시행 시 예견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 초안에서 제시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	○반영	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경상남도 (환경정책과)	가. 대기보전 ◦동 사업지구 인근에 정온시설에 대해 공사 및 운영시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	◦반영	
	◦발파시 사전통지, 시험발파를 통한 지발당 장약량 조절, 방음(방진)매트를 사용할 것	◦반영	
	나. 자연보전 ◦계획노선 내 생태현황을 조사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	◦반영	
	◦도로 추가개설 구간 등 향후 공사시 주변지형 및 생태축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생태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공사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(지형)훼손에 대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	◦반영	
	◦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(같은 법 제29조,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·허가 등의 처분을 한 때) 및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(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·허가 처분을 한 때)으로 개발면적 3만㎡ 이상인 경우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임.(인·허가 기관은 인·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내용 등을 도 환경정책과에 통보)	◦반영	
	◦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개정 안내(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, '13.9.23 시행) -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㎡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-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-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㎡ 이상인 사업	◦반영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경상남도 (환경정책과)	<p>다. 습지보전</p> <p>◦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수달, 2급 삿, 천연기념물 원앙,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·분포가 확인되었으므로</p>	◦반영	
	<p>-번식·산란시기를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과 야생동물 서식지 피해예방·저감대책 이행</p>	◦반영	
	<p>-사업시행에 따른 서식지 영향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</p>	◦반영	
	<p>-멸종위기 보호종 등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 및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</p>	◦반영	
	<p>◦산지 절토와 도로개설로 인한 이동로 단절 구간에는 로드킬 예방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이행하고, 유도울타리 설치, 배수로에는 양서파충류의 매몰, 고사 등 예방을 위한 축구 등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</p>	◦반영	
	<p>◦사업예정지 식생조사시 생태계 교란 외래종 식물인 돼지풀, 단풍잎돼지풀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공사시행시 토사이동과 표토 노출, 토양 유실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식물의 인위적인 확산 예방을 위한 사전제거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</p>	◦반영	
	<p>라. 자연순환</p> <p>◦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토록 계획하여 시행하여야 함</p>	◦반영	
	<p>◦동 사업이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“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”에 해당될 경우 순환골재의무 사용량을 준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해당 군에 제출하여야 함</p>	◦반영	
	<p>마. 환경관리</p> <p>◦사업계획의 변경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정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</p>	◦반영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경상남도 (환경정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설자재는 가급적 저탄소,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(환경표지, 우수재활용제품)을 구매하여 사용할 것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을 도입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고, 각종 설비는 절약 및 고효율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부분반영 -경제성·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검토하여 절약 및 고효율인증 제품을 사용(LED등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운영 시 야간조명 증가에 따른 생태적 악영향을 저감하고,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 조명시 설물 최소화, UV발생이 적은 광원의 사용 및 필터 설치, Cut-off형 조명갓 설치 등의 저감 대책을 수립할 것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발파, 향타 등 고소음·진동을 유발하는 공종이 수반될 경우 최적의 방음·방진대책 수립을 강구하고, 사람이나 가축,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것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도로공사의 경우 B/P장, C/R장 주변에서 소음·진동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빈발하므로 장소 선정시 생활환경에 영향이 없는 지점에 선정함이 바람직하며, 부득이 한 경우 인근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할 것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도로계획 구간 중 생태자연도 1, 2등급 등 식생이 우수한 구간은 터널로 계획하거나 우회하는 등 지형(자연생태계)훼손을 최소화할 것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도로개설로 마을, 농경지, 생태축(산지축)의 단절이 발생하는 구간은 통로박스, 수로박스, (개착 또는 굴착)터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로드킬을 예방하고 생태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단절된 수도지맥을 개착터널 형태로 복원할 계획을 시행할 것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학교보건법 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)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사내의 소음은 55dB(A)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	◦반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환경보전목표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소음 60dB(A), 진동 57dB(V), 진동속도 0.2kine(시설물) 이하, 0.02kine(축사) 이하로 설정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함 	◦반영	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경상남도 (환경정책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협의과정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것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 및 당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책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·시행하고,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,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	◦반영	
경상남도 (수질개선과)	<p>가. 수질정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터널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하수법 제9조의2(유출지하수의 이용 등)에 따라 유출 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(300㎡/일)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터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고성군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	◦반영	
	<p>나. 수질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터널 굴착시 발생하는 폐수는 강알칼리성으로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며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(허가)를 관할 시·군에 득하시고, 만약 양방향 굴착 방식으로 굴착시 양쪽 시점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 	◦반영	
	<p>다. 수계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오염총량관리 황강A 단위유역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거창군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등에 대비 배수구역을 세분하여 침사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, 운영시 비점오염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·반영 할 것 	◦반영	
경상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감천 등 하천통과구간 공사 시 가도설치로 인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방안 수립 	◦반영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한 자연부락(대동·문의·임기·화전·달매마을 등)과 축사, 양계장에 대한 소음, 먼지 등에 대한 환경저감방안 수립 	◦반영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경상북도	◦절·성토 공사는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시행시에는 토사유출방지 및 사면안정화 대책 수립강구	◦반영	
	◦각종 중장비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주변농작물(시설하우스 등)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 세론, 세차, 살수, 덮개설치, 침사지설치, 차량속도 규제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	◦반영	
	◦경작지 진출입 및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	◦반영	
	◦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환경오염 저감방안 및 반영내역과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,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,	◦반영	
	◦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(예상포함)할 경우 공사 및 운영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내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	◦반영	
	◦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	◦반영	
	◦터널굴착공사시 발생폐수는 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”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동법 제33조에 의거 사전 인·허가를 득하여야 함	◦반영 -우두령터널은 개착식 구조 -터널굴착공사 없음	
	◦향후 동 사업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협의시 세부적인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최종배출부하량에 대해 김천시와 사전 할당 협의하여야 함. ※대상항목: BOD, T-P	◦반영	
가. 항목별 검토의견 ◦자연생태환경분야 -계획노선 인근 법적 보호종인 수달, 삿, 황조롱이, 원앙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공사 시행 전·후 철저한 환경영향 조사로 공사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◦반영		

구분	의견내용	반영여부(미반영사유)	비고
경상북도	-공사시 야간공사 지양, 토사의 하천유입을 방지하는 등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, 야생동물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것	◦반영	
	◦대기환경분야 -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평가서(초안)에 제시된 주기적 살수, 차속의 제한, 가설방진망 설치, 공사장비 분산 투입 등 저감방안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함	◦반영	
	-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 공회전 금지 및 노후차량 사용 자제, 운영시 신 재생에너지 사용, 수목 식재 등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◦반영	
	◦수환경분야 -가능한 절·성토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함	◦반영	
	◦토지환경분야 -토공 및 지장물 철거 작업 중 예상치 못한 토양오염물질 발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면붕괴, 낙석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·지질 특성을 고려한 사면안정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	◦반영	
	◦생활환경분야 -공사장비에 의한 폐유,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처리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	◦반영	
	-사업지역 인근에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작업시간 조정,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적정 조치하고 예측하지 못한 정신적·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 대책 마련할 것	◦반영	
	-건설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소음·진동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 시 미리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적정 공법을 선택·적용할 것	◦반영	
	◦기타 -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실시계획 승인 후 20일 이내에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 바람	◦반영	

【 별첨 】

1. 신문 광고

2. 설명회 개최 사진

3.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검토의견

3.1 주민

3.2 낙동강유역환경청

3.3 경상북도

3.4 경상남도

3.5 거창군

1. 신문 광고

<p>■ 한국일보(2013.09.02)</p>	<p>■ 경북일보(2013.09.03)</p>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한국일보</h1> <p>8 2013년 9월 2일 월요일 30판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"> <p>거창군 공고 제2013-958호</p> 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</h3> <p>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「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」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3. 08. 30</p> <h4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거창군수</h4> <p>1. 사업의 개요 가. 사업명 : 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 나.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기리 중점 :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다. 연장 : 16.7km 라.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</p> <p>2. 공람기간 및 장소 가. 공람기간 : 2013. 09. 03 ~ 2013. 09. 30 (20일 이상) 나. 공람장소 : 거창군 건설과, 거창군 중앙면사무소 김천시 건설과, 김천시 대덕면사무소</p> <p>3.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. 일시 : 2013년 9월 10일(화) 10:30, 14:00 나. 장소 :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(10:30) 거창군 중앙면사무소 (14:00)</p> <p>4. 주민의견 제출기한 :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</p> <p>5.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.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과 (☎ 055-940-3552) ○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과 (☎ 054-420-6334) ○ 경상남도 거창군 중앙면사무소 (☎ 055-940-7432) ○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(☎ 054-429-3622) ○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(☎ 051-660-1147)</p> </div>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경북일보</h1> <p>2013년 9월 3일 화요일 경북일보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"> <p>거창군 공고 제2013-958호</p> 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</h3> <p>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「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」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3. 8. 30</p> <h4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거창군수</h4> <p>1. 사업의 개요 가. 사업명 : 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 나.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상기리 중점 :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다. 연장 : 16.7km 라.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</p> <p>2. 공람기간 및 장소 가. 공람기간 : 2013. 09. 03 ~ 2013. 09. 30 (20일 이상) 나. 공람장소 : 거창군 건설과, 거창군 중앙면사무소, 김천시 건설과, 김천시 대덕면사무소</p> <p>3.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. 일시 : 2013년 9월 10일(화) 10:30, 14:00 나. 장소 :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(10:30), 거창군 중앙면사무소 (14:00)</p> <p>4. 주민의견 제출기한 :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</p> <p>5.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.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•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과 (☎ 055-940-3552) •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과 (☎ 054-420-6334) • 경상남도 거창군 중앙면사무소 (☎ 055-940-7432) •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(☎ 054-429-3622) •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(☎ 051-660-1147)</p> </div>

■ 경남일보(2013.09.02)

慶南日報

2013년 09월 02일 월요일
002면 종합

거창군 공고 제2013-958호

**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
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
개최 공고**

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「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」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08. 30

거창군수

1. 사업의 개요

가. 사업명 : 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
나. 위치 : 시점 :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
종점 :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
다. 연 장 : 16.7km

라.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가. 공람기간 : 2013. 09. 03 ~ 2013. 09. 30 (20일 이상)
나. 공람장소 : 거창군 건설과, 거창군 중앙면사무소
김천시 건설과, 김천시 대덕면사무소

3.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

가. 일 시 : 2013년 9월 10일(화) 10:30, 14:00
나. 장 소 :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(10:30)
거창군 중앙면사무소 (14:00)

4. 주민의견 제출기한 :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

5.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

가.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과 (☎ 055-940-3552)
-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과 (☎ 054-420-6334)
- 경상남도 거창군 중앙면사무소 (☎ 055-940-7432)
-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(☎ 054-429-3622)
-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(☎ 051-660-1147)

■ 경남도민일보(2013.09.02)

경남도민일보

2013년 09월 02일 월요일
017면 스포츠

거창군 공고 제2013-958호

**주상-한기리 국도
건설공사 환경영
향평가(초안) 공람
및 주민설명회 개
최 공고**

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「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」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08. 30

거창군수

1. 사업의 개요

가. 사업명 : 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
나. 위치 : 시점 :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/ 종점 :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
다. 연장 : 16.7km
라.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

2. 공람기간 및 장소

가. 공람기간 : 2013. 09. 03 ~ 2013. 09. 30 (20일 이상)
나. 공람장소 : 거창군 건설과, 거창군 중앙면사무소, 김천시 건설과, 김천시 대덕면사무소

3.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

가. 일 시 : 2013년 9월 10일(화) 10:30, 14:00
나. 장 소 :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(10:30)
거창군 중앙면사무소 (14:00)

4. 주민의견 제출기한 :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

5.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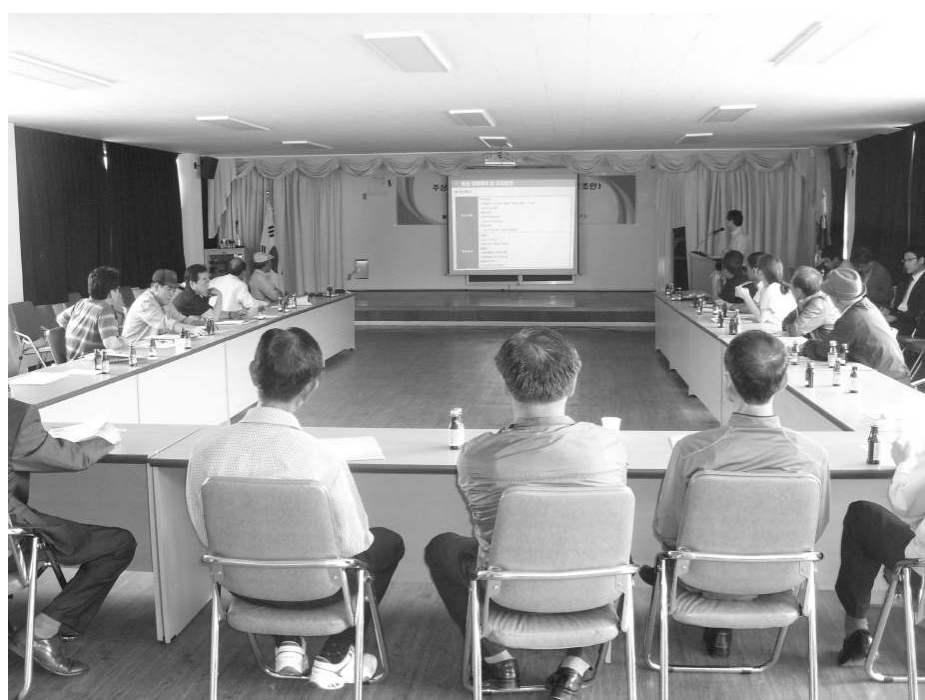
가.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람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경상남도 거창군 건설과 (☎ 055-940-3552)
-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과 (☎ 054-420-6334)
- 경상남도 거창군 중앙면사무소 (☎ 055-940-7432)
-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사무소 (☎ 054-429-3622)
-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(☎ 051-660-1147)

2. 설명회 개최 사진

설명회 개최
(2013.09.10)



<김천시 대덕면사무소>



<거창군 용양면사무소>

3.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검토의견

3.1 주민

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(별시 제1호서약)

주민의견 제출서

사업명	주상~한기리 복도건설공사		
사업장 위치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설기리 ~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		
사업자	부산지방국토관리청		
의견제출자	성명	이 경 영	생년월일
	주소	거창군 용양면 산토리 1422-2	1970. 5. 23. 전화번호 010-6385-2760
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	용양면 산토리 지 1444번지 외 2필의 보위과로서 도시조성이 필요하면 의견 제출하길 원합니다.		
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획 필요성(해당하는 곳에 표시 합니다) : 필요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, 불필요[<input type="checkbox"/>] - 이유(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 도시편익 관련 의견으로 인하여 필히 공청회 개회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.		
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
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3년 9 월 26 일
제출자 이 경 영 (서명 또는 인)

거창군수 귀하

처리절차

주민의견 제출
주민

→

접수
사업자/
해당 행정기관

→

의견수렴 여부 결정
사업자/
해당 행정기관

→

주민의견 수렴 결과
및 반영여부 공개
사업자/
해당 행정기관

3.2 낙동강유역환경청

정부3.0, 국민과의 약속



낙동강유역환경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회신[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]

1.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-4605(2013.08.28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~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일원 일원의 「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」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1부. 끝.

낙동강유역환경청장



수신자 거창군수(건설과장),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(도로공사2과장)

주무관 **여주연** 주무관 **박귀철** 과장 전결 2013. 10. 8. **주기희**

협조자

시행 환경평가과-6892 (2013. 10. 8.) 접수 도로공사2과-5911 (2013. 10. 8.)

우 641-8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4-3 / <http://me.go.kr/ndg>

전화번호 055-211-1651 팩스번호 055-211-1606 / youni126@me.go.kr / 대국민 공개

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 집니다.

[붙임]

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

[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]

< 사업 개요 >

- 위치 :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~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일원
- 사업규모 : L=16.7km(1공구 8.1km, 2공구 8.6km) B=13.5m(2+1차선)
- 승인기관 / 사업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 / 부산지방국토관리청

1. 총괄

-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~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일원의 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으로서 아래의 각 평가항목별 검토의견을 충실히 검토·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·제시하여야 함.

2. 평가항목별 검토의견

가. 대기질

- 터널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
 - 터널 공사시 환기계획 등을 포함한 저감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
-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
 -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반기 1회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분기 1회 이상으로 설정하고, 조사지점에 성기리(1), 독립가옥(6)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·제시하여야 함.

나. 수질

- 수질 조사분석
 - 수질 현황조사의 목적은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의 수질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 조사결과를 2회만 제시하였으나, 하천의 유량과 수질은 계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량이 풍부한 시점에 유량과 수질을 추가 측정하여 제시하여야 함.

- 공사중 오수처리계획
 - 공사중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의 예측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오수발생량을 예측하고 오수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점의 수질을 고려하여 오수처리수의 방류수 목표수질 농도를 설정·제시하여야 함.
 - ※ 오수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점의 수질이 양호하고 하류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원이 위치하므로 오수처리수의 방류수 목표수질 농도를 BOD 및 SS 8mg/ℓ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
 - 저수지 및 하천과 인접한 도로 및 교량 노면으로 부터 초기에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설치위치 및 저감시설 종류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.
-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
 - 조사주기를 운영시 반기 1회로 하였으나 운영시에도 유량과 수질의 계절적 영향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조사·분석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
 - 「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(환경부, 2008)」을 참고하여 시설의 유지, 관리, 수질 모니터링 등 비점오염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
 - 터널 인근 관정에 대한 지하수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
- 수질오염총량관련
 -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배출 부하량 산정 등 총량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.
 - 「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개발(배출) 부하량에 상응하는 기존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낙동강청(수질총량관리과)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거창군으로부터 기간 외 사업에 대한 할당을 받아 총량협의를 하여야 함.
 - 동 사업지역은 수질오염총량시행계획 지역으로 「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」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 및 해당 지자체의 개발사업 협의내용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.

다. 지형·지질

◦ 수도지맥 복원계획

- 계획노선은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수도지맥을 통과하고 있으나 지형훼손이 발생하는 개착식터널로 계획하고 있어 굴착식 터널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계획노선 구간에 개착식 터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.
- 계획노선은 수도지맥 능선축 구간을 개착식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지맥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복원 후 지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복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.
- 능선축 구간에 절토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우두령 터널에 대한 단면을 일정 구간별로 다수 작성
- 공사시 개착구간(실제 지형변화가 일어나는 범위)을 도면에 표시하고 복원 후 지형 및 지형구배, 계획고 등을 함께 표시
- 지형복원에 필요한 토사량을 산정하고 이를 부족토량 확보계획에 반영

◦ 지형변화 예측 및 대책

- 사업시행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지형변화의 규모를 예측하여 결과를 작성하고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를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
- 사면이 발생하는 구간의 위치, 연장, 최대절성토 사면고 등을 표로 작성
- 절토사면고 20m 이상, 성토사면고 10m 이상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사면고를 명시

라. 동·식물상

◦ 기존 자연환경조사 등을 포함한 생태계영향 검토

- 도로예정노선에 대한 생태계 현황조사가 2회 실시를 하였으나, 그 중 1회는 동계에 실시되어 도로노선에 대한 자연환경의 계절적 현황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동·식물상의 출현,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.
- 동·식물상 조사결과는 문헌, 탐문 및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.

- 현 도로사업의 경우 2006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므로, 당시 조사된 자연환경조사의 결과를 추가 포함 후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생물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전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
- 출현 생물군에 대한 목록 작성은 조사지점별 그리고 조사시기별로 작성하여 대상 생물군에 대한 지점간 및 시기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, 출현 종 목록에는 문헌자료 조사결과를 함께 병기하되 문헌조사의 출처를 제시하여야 함
 - 기존 자료를 추가하여 사업예정지구 및 그 주변에 대한 생태계 정밀분석
 - 주요 생물종에 대해서는 각 종별 영향예측 및 보전방안을 제시
- 생태네트워크 분석 및 육상생물 보전방안
 - 육상 및 육수생물상의 보전대책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제시 가능한 교량, 생태통로, 배수관, 통로암거, 측구, 유도펜스 등의 시설물들은 사업구간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과 위치들에 대한 분석 후,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
 - 현재 제시된 저감시설물 및 보전대책은 대상구간의 생태계 영향여부, 대상생물의 영향정도 및 효과에 대한 분석 후 계획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, 사업구간과 그 주변에 대한 생태네트워크(Blue-Green Network)와 대상노선으로 인해 영향 및 단절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및 생물군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저감시설물의 배치, 규모, 수량 등을 확정하여야 함
 - 대상구간 및 그 주변의(각 분류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) 생태네트워크 분석을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실시
 - 생태네트 분석에서는 ① 도로구간 주변의 구체적인 생태네트워크 현황, ② 사업구간 주변 주요 생물군 및 주요 서식지 현황 ③ 도로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단절 및 영향정도 ④ 도로공사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 및 서식지 등이 제시되어야 함
 - 분석된 생태네트워크 위에 사업구간을 중첩 표시하여 생태적 단절 및 영향정도를 도면에 시각적으로 표시
 - 도로공사로 생태적 단절 또는 영향이 예상되는 생물군과 구간을 제시

- 생태네트워크분석 후 보전대책 및 저감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도로공사 구간 제시
- 각 저감시설물의 경우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 생물군 제시
- 대상 생물군의 분석 이후 각 저감시설물(교량, 생태통로, 배수관, 통로암거, 측구, 유도펜스 등)의 위치, 규모, 수량을 결정하여 도면에 제시
- 주요 종 및 서식지 정밀모니터링 방안
 -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림, 논습지 및 하천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, 서식 또는 서식가능성이 있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과 서식지에 대한 영향 여부와 보전대책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하며, 영향이 예상되는 법적보호종 등 주요 종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생육이 왕성한 시기 정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
 - 정밀 모니터링 시 대상 법적 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선수립하여야 함(※ 「개발사업 생태계훼손 사고 대응매뉴얼 구축」(KEL, 2010) 42-46쪽 참조)
 - 각 대상 법적보호종, 주요 생물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하여 생활사를 고려한 모니터링계획 수립
 - 정밀 모니터링시 조사기간, 조사지점, 조사경로를 결과에 첨부
- 훼손수목 추가이식
 -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량(11,964주)이 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식 수목량 산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목훼손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, 보전가치가 있는 참나무류 및 소나무류를 중심으로 아래 제시된 자료 및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훼손수목의 수형, 흉고직경, 지형, 토양환경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음 훼손수목을 최대한 이식 또는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(※이식수목량 재산정 시 총 훼손 수목량의 10% 이상을 이식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)
 - 지자체에 무상 양도하여 녹지 및 공원조성에 활용하는 방안 추가검토
 - 이식수목 가이식 계획여부
 - 가이식 및 이식에정지역이 선정된 경우 도면에 해당지역 제시
 - 수목관리계획 수립

※ 이수동·최송현, 2009. 훼손예정지의 지형 및 수목 형태를 고려한 이식목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.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(6): 535-544.

※ 한국수목보호연구회, 2001. 훼손지의 수목이식 활용에 관한 조사. 수목보호 6:149-156

마. 친환경적 자원순환

-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관리계획
 - 공사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재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 - 지장물 철거시 유해물질(석면, 수은, 변압기 내의 PCB 등)이 포함된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, 이와 같은 유해성 폐기물 발생시의 적정 처리계획 수립

바. 소음·진동

-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
 - 본 평가서(초안)에서는 예측식 및 예측인자의 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근거의 제시 없이 도로교통 소음도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
 - 계획노선과 유사한 지역(교통량, 차속 등 고려)을 대상으로 실측소음도와 예측소음도를 비교검토한 타당성 검토자료
 - 목표년도까지 5년 간격의 서비스 수준에 따른 구간별 및 시간대(24시간)별 차량의 통행속도와 교통량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하여 산출(교통관련 전문가(소속 및 참여자 등을 명기)의 교통예측결과에 관한 근거자료와 의견서 첨부)
 - 상기 자료를 근거로 해당 연도의 시간대별 소음도 예측
 -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연도 및 시간대 선정
 - 저감대책의 수립시기와 방법 선정(선정 근거 명기)
 - 각 정온시설의 층별 소음도 산출(2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수음점 높이 고려)
 - 계획노선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현황소음 및 소음예측 분포 등을 근거로 소음기여도 산정 및 누적 평가
-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
 - 공사시 및 운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음·진동 피해가 발생하는 정온

시설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의 수립이 가능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
(모니터링 지점 선정, 기간, 빈도 등)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 끝.

3.3 경상북도

"아시아를 넘어 세계로, 이스탄불-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개최(8.31-9.22)"



경 상 북 도



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(도로공사2과장)

(경유)

제목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제출(주상-한기리)

1.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-4606(2013.08.28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귀청에서 시행중인 주상-한기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』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를 검토의견은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불 임 검토의견 1부, 끝.

경 상 북 도



주무관	이경원	주무관	박병태	도로계획사무 관	박동업	도로철도과장	양정비	전결 2013. 9. 23.
협조자								

시행 도로철도과-12977 (2013. 9. 23.) 접수 도로공사2과-6298 (2013. 9. 23.)

우 702-010 대구 북구 연암로 40 (산격동) / http://www.gb.go.kr

전화번호 053-950-2282 팩스번호 053-950-2503 / lkh12157@korea.kr / 비공개(5)

"정부3.0, 국민과의 약속".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.

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
- 위치 :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~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
- 연장 : 16.7km
- 공영개시 : 2019년

□ 검토의견

- 감천 등 하천통과구간 공사 시 가도설치로 인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방안 수립.
- 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한 자연부락(대동·문의·임기·화전·달매마을 등)과 축사, 양계장에 대한 소음, 먼지 등에 대한 환경저감방안 수립
- 절·성토 공사는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시행시에는 토사유출방지 및 사면안정화 대책 수립강구
- 각종 중장비 이동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주변농작물(시설하우스 등)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 세륜, 세차, 살수, 덮개설치, 침사지설치, 차량속도 규제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- 경작지 진출입 및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-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환경오염 저감방안 및 반영내역과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립,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,
-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(예상포함)할 경우 공사 및 운영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내

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

-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
- 터널굴착공사시 발생폐수는 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”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동법 제33조에 의거 사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.
- 향후 동 사업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협의시 세부적인 삭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최종배출부하량에 대해 김천시와 사전 할당 협의하여야 함.

※ 대상항목 : BOD, T-P

□ 항목별 검토의견

◦ 자연생태환경분야

- 계획노선 인근 법적 보호종인 수달, 삵, 황조롱이, 원앙 등이 조사되었으므로 공사 시행 전·후 철저한 환경영향 조사로 공사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- 공사시 야간공사 지양, 토사의 하천유입을 방지하는 등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, 야생동물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할 것

◦ 대기환경분야

-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평가서(초안)에 제시된 주기적 살수, 차속의 제한, 가설방진망 설치, 공사장비 분산 투입 등 저감방안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함
-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 공회전 금지 및 노후차량 사용 자제, 운영시 신 재생에너지 사용, 수목식재 등의 저감

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
◦ 수환경분야

·가능한 절·성토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함

◦ 토지환경분야

·토공 및 지장물 철거 작업 중 예상치 못한 토양오염물질 발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면붕괴, 낙석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·지질 특성을 고려한 사면안정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

◦ 생활환경분야

·공사장비에 의한 폐유,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처리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

·사업지역 인근에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작업시간 조정, 가설방음 판넬 설치 등 적정 조치하고 예측하지 못한 정신적·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 대책 마련할 것

·건설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소음·진동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 시 미리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적정 공법을 선택·적용할 것

○ 기타

·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실시계획 승인 후 20일 이내에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 바람

3.4 경상남도

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(2013.9.6-10.20) /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(2013.9.27-11.10)



경 상 남 도



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(도로공사2과장)

(경유)

제목 「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」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검토의견 제출

1.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-4606호(2013.08.28)와 관련입니다.

2. 귀 청에서 시행 중인 「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」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우리 도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임 : 1.검토의견서 1부.

2.관련부서 협의의견 공문 사본 각 1부. 끝.

경 상 남 도 지 사



주무관 이세호 도로계획담당 이용재 도로과장 2013. 9. 12. 이채건

협조자 주무관 권현진

시행 도로과-9259 (2013. 9. 12.) 접수 도로공사2과-5140 (2013. 9. 13.)

우 641-7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(사림동) 도로과 / <http://www.gsnd.net>

전화번호 055-211-4666 팩스번호 055-211-4659 / lsh4311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정부3.0, 국민과의 약속

협 의 의 견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
도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사업 계획노선에 근접한 정온시설(주거지역 및 사육시설, 학교 등)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므로 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지형 및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식재대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불가치하게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시각적 저해를 경감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방음벽 설치를 고려하여야 함. ○ 본 사업시행으로 기존도로의 단절, 동일 농경지의 인위적 분리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구간을 조사 분석한 후 통로박스 등으로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생활 및 영농장비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충분한 규격으로 설치되어야 함. ○ 주요 절·성토 구간 및 기타 인접 지역의 급경사 지역에 대해 현장 여건에 맞는 사면안정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특히 강우 시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가옥 및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침사지, 가배수로의 설치와 비닐덮기의 적절한 활용 등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,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적물을 수시로 준설·정비하여야 함. ○ 절·성토 사면에 대한 복원 시 토질과 사면안정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의한 공법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 등과의 부조화 및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적,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적인 식생천이가 진행될 수 있는 생태복원녹화공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. ○ 기타 사업시행 시 예견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 초안에서 제시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.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
환경정책과	<p>< 대기보전담당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사업지구 인근에 정온시설에 대해 공사 및 운영시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. ○ 공사시 공사차량덮개 씌우기, 주기적 살수, 차량세론·세차시설 운영, 주말 및 야간작업을 지양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것. ○ 발파시 사전통지, 시험발파를 통한 지발당 장약량 조절, 방음(방진)매트를 사용할 것. <p>< 자연보전담당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노선 내 생태현황을 조사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. ○ 도로 추가개설 구간 등 향후 공사시 주변지형 및 생태축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생태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공사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(지형)훼손에 대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. 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(같은 법 제29조,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·허가 등의 처분을 한 때) 및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(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·허가 처분을 한 때)으로 개발면적 3만㎡ 이상인 경우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임.(인·허가 기관은 인·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내용 등을 도 환경정책과에 통보) ○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개정 안내(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, '13.9.23 시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㎡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-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-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㎡ 이상인 사업 <p>< 습지보전담당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수달, 2급 삿, 천연기념물 원앙,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·분포가 확인되었으므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번식·산란시기를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과 야생동물 서식지 피해예방·저감대책 이행 - 사업시행에 따른 서식지 영향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. - 멸종위기 보호종 등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 및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. ○ 산지 절토와 도로개설로 인한 이동로 단절 구간에는 로드킬 예방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이행하고, 유도울타리 설치, 배수로에는 양서파충류의 매몰, 고사 등 예방을 위한 측구 등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. ○ 사업예정지 식생조사시 생태계 교란 외래종 식물인 돼지풀, 단풍잎돼지풀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공사시행시 토사이동과 표토 노출, 토양유실 등으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식물의 인위적인 확산 예방을 위한 사전제거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.적이 3만㎡ 이상인 사업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
환경정책과	<p>< 자연순환담당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토록 계획하여 시행하여야 함. ○ 동 사업이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“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”에 해당될 경우 순환골재의무 사용량을 준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해당 군에 제출하여야 함. <p>< 환경관리담당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의 변경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정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. ○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설자재는 가급적 저탄소,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녹색제품(환경표지, 우수재활용제품)을 구매하여 사용할 것. ○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을 도입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고, 각종 설비는 절약 및 고효율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. ○ 운영 시 야간조명 증가에 따른 생태적 악영향을 저감하고, 빛공해 방지를 위해 옥외 조명시설물 최소화, UV발생이 적은 광원의 사용 및 필터 설치, Cut-off형 조명갓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. ○ 발파, 향타 등 고소음·진동을 유발하는 공중이 수반될 경우 최적의 방음·방진대책 수립을 강구하고, 사람이나 가축,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것. ○ 도로공사의 경우 B/P장, C/R장 주변에서 소음·진동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빈발하므로 장소 선정시 생활환경에 영향이 없는 지점에 선정함이 바람직하며, 부득이 한 경우 인근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할 것. ○ 도로계획 구간 중 생태자연도 1, 2등급 등 식생이 우수한 구간은 터널로 계획하거나 우회하는 등 지형(자연생태계)훼손을 최소화할 것. ○ 도로개설로 마을, 농경지, 생태축(산지축)의 단절이 발생하는 구간은 통로 박스, 수로박스, (개착 또는 굴착)터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로드킬을 예방하고 생태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. ○ 단절된 수도지맥을 개착터널 형태로 복원할 계획을 시행할 것. ○ 학교보건법 제4조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)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사 내의 소음은 55dB(A)이하로 유지하여야 함. ○ 환경보전목표는 축사 등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소음 60dB(A), 진동 57dB(V), 진동속도 0.2kine(시설물) 이하, 0.02kine(축사) 이하로 설정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함. ○ 협의과정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·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것. ○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행정기관 및 당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대책 및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·시행하고,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,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.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
수질개선과	<p>○ 수질정책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터널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하수법 제9조의2(유출지하수의 이용 등)에 따라 유출 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(300㎥/일)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터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고성군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함. <p>○ 수질관리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터널 굴착시 발생하는 폐수는 강알칼리성으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며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(허가)를 관할 시·군에 득하시고, 만약 양방향 굴착 방식으로 굴착시 양쪽 시점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 <p>○ 수계관리분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염총량관리 황강A 단위유역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거창군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. -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등에 대비 배수구역을 세분하여 침사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, 운영시 비점오염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·반영 할 것

3.5 거창군

"매력 있는 창조 거창"

거 창 군

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(도로공사2과장)

(경유)

제목 환경영향평가(초안)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

1.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-4606(2013.08.28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귀청에서 추진 중인 「주상~한기리 국도건설공사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대한 우리군 관련실과 협의결과 및 주민설명회 개최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○ 실과협의내용

관련실과	주요 협의 내용	검토결과	비고
녹색환경과	환경 및 수질부분에 대한 의견	별도의견없음	

- 붙임 : 1. 등록부 2부.
2. 주민의견서 1부.
3. 공고문(일간지, 중앙지, 홈페이지)1부. 끝.

거 창 군



★주우관	최성희	주우관	조경자	도로담당주사	김정옥	환경관리담당 주사	유원종
녹색환경과장	김삼수	건설과장	전결 2013. 10. 16. 임제근				
협조자							
시행	건설과-4936	(2013. 10. 16.)		접수	도로공사2과-8156	(2013. 10. 16.)	
우	670-807	"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4-1 건설교통과				/ http://www.gcgn.go.kr	
전화번호	055-940-3552	팩스번호	055-940-8812	/	csh0202@korea.kr	/	대국민 공개